부여군의회 공고 제2014-　　호

공　　고

부여군공인 조례 제6조, 제9조, 11조 규정에 의거, 신조 및 폐기 등록한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 11. 27.

부 여 군 의 회 의 장

1. 신조(등록) 및 폐기 사유 :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명칭변경
(경리관 ⇒ 재무관) 공인 신조 및 폐기
2. 신조공인 최초사용일 : 2014. 11. 29.
3. 폐기공인 폐기년월일 : 2014. 11. 29.
4. 신조(등록) 및 폐기 공인 내역

구　분	공 인 명	글씨체 및 규격	인　영	비　고
신조	부여군의회 재무관인	훈민정음체 정방형 (2cm ×2cm)	부여군의회 재무관인	
폐기	부여군의회 경리관인	한글전서체 정방형 (2cm ×2cm)		